

제268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2008년 3월 14일 (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3. 14.
행정자치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2월 22일
충청북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2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6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 3. 10)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수정)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1. 제안이유

- 가.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 나.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기능 특성화 및 각 기관간 협

동계획, 기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2조).

나.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임명함(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4조~제7조).

라.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조사, 연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1조).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

1.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이 조례안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에는 이견이 없음.

2. 안 제9조의 서면심의에 대하여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서면심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으

나 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제9조를 보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서면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이 포괄적으로 한계가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안 제11조의 수당 등에 대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조례에서는 수당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고 하겠으나 기존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겠으나 표현에 있어서는 타 조례와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체계·자구 검토의견

기관(위원회, 협회 등),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기금 등의 명칭은 조례제명 띄어쓰기 예외로 붙여 쓰기를 하므로 조례 제명 중 위원회 명칭은 다음과 같이 붙여 쓴다.

- 충청북도V혁신도시관리위원회 ⇒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 제목은 조를 설명하는 부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안 제1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조와 조 제목은 다음과 같이 붙여 쓴다.

- 제1조 V(목적) ⇒ 제1조(목적)

안 제1조 중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의 ‘~에 의하여’는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으로 ‘~에 따라’로 쓰며, ‘의 규정’은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생략한다.

-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법문에서 용어정의·약칭·총칭·준용용어·인용 등에는 큰따옴표(“”)를 사용하므로 안 제2조 본문과 안 제3조제2항의 약칭은 큰따옴표를 사용한다.

- 제2조 본문 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 ⇒ (이하 “위원회”라 한다)
- 제3조제2항 중 (이하 ‘도지사’라 한다) ⇒ (이하 “도지사”라 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 요지

1. 수정이유

조례 제명과 체계·문구 등을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민 중심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수정함.

2. 수정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조문을 기존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와 표현 통일(안 제11조).

나. 조례 제명, 조와 조의 제목 붙여쓰기 등 체계·자구를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민중심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수정(조례 제명, 안 제1조 내지 안 제12조)

VI. 심사결과 : 수정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8. 3. 10.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이유

조례 제명과 체계·문구 등을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민중심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조문을 기존의 위원회에 관한 조례와 표현 통일(안 제11조).
- 나. 조례 제명, 조와 조의 제목 붙여쓰기 등 체계·자구를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국민중심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수정(조례 제명, 안 제1조 내지 안 제12조)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명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1조 중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령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안 제2조 본문 중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이하 ”도지사“로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1조 내지 안 제12조의 조와 조의 제목은 붙여 쓴다.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u>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u> <u>설치·운영 조례안</u></p>	<p><u>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u> <u>설치·운영조례안</u></p>
<p>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u>궤공기관 지</u> <u>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u> <u>원에 관한 특별법」 제 3조 및 같은</u> <u>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u> <u>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u> <u>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u> <u>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 1조(목적) ----- ----- ----- --- <u>시행령 제32조에 따라</u> ----- ----- -----</p>
<p>제 2조 (기능) 충청북도 혁신도시관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6. (생략)</p>	<p>제 2조(기능) ----- --(이하 “위원회”라 한다)----- ----- 1.~6. (제정안과 같음)</p>
<p>제 3조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 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p>	<p>제 3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이하 “도지사”라 한다)----- -----</p>
<p>제 11조 (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 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 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조와 조의 제목 붙여쓰기는 수정안대비표 작성을 생략하였음.

예시) 제1조 (목적) ⇒ 제1조(목적)

조례 제 호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기타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토해양부, 충청북도 및 진천군·음성군 혁신도시업무 관계 공무원
2.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의 노동조합과 그 밖의 혁신도시 관련기관·경제단체 등에 속한 자
3.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4. 도시계획 및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도지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도지사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과)장이, 서기는 같은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서면심의) 도지사인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서면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단체·전문가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선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및 건설교통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 밖의 임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에 속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

명하는 자가 된다.

⑤위원장은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그 밖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32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도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가 협의하여 정한다.